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98

제출년월일 : 2000. 1.

제 출 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부당제거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규제개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여 규제 신고센타를 둠(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조례표준안 1부.
- 관련법령 (발췌) 1부.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경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登記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질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통폐 ·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발췌)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5<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금지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